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일부장관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특례 >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85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경호의원 등 108인
2. 발 의 일 : 2024. 11. 19.
3. 회 부 일 : 2024. 11. 20.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8년 동안 정부에서 13차례나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24년 10월 17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책무로서 수행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자체

를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단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며,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책임의 방기임.

이에 국회 교섭단체 중 일정 기간 안에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이루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국회는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

국회가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30일 이내 이사를 추천하도록 재요청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의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북한인권재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 추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두 차례의 요청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추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이사 추천 요청 및 재단 임원 구성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국회에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추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이사 추천을 재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현행	개정안
	<u>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u>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을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제10조 및 제11조),¹⁾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1)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 ② ~ ⑥ (생략)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²⁾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제1항).³⁾

□ 개정안(제12조의2)은 국회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사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재단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국회가 추천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고, 이 경우 국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제1항), 국회가 해당 기간 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면 통일부장관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청하여야 하고(제2항), 이와 같은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은 국회가 이사를 추천할 때까지 직권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⁴⁾를 규정하고 있음(제3항).

□ 재단은 여야 합의로 제정(2016. 3. 3.)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

2) 교섭단체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통일하여 각 교섭단체 간에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사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국회법해설』 (2024. 7.), p. 156.

3)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례는 본칙의 규정에 대해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법 제○조제△항 본문에 따른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방식과 같이 구체적으로 특례의 대상이 규정된 조문(항, 호, 본문, 단서, 전단, 후단까지 특정)과 함께 특례의 대상이 되는 내용까지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입법 명확성을 위해 바람직함.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p. 731-732.

을 위한 핵심적 기구이지만, 국회의 재단 이사 미추천⁵⁾으로 인해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아 2025년 2월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통일부는 이 법이 제정된 2016년 3월부터 재단 임원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⁶⁾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당시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대하여 이사 추천을 촉구하여 국회에서의 이사 추천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의결하기도 하였으며,⁷⁾

2024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여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이 국회사무총장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사추천부작위위법확인’ 사건에 대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⁸⁾

5) 2021년 3월 당시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등 5명 추천서류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접수하였다고 보도(3. 24.)된 바 있고, 2022년 8월 및 2024년 9월에 여당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김태훈(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등 5명의 이사 후보를 국회에 추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2023. 1. 27., 2024. 9. 19. 등)됨.

6) 재단 이사 추천 관련 통일부 공문은 총 14회[2016년 4회(8.11, 10.5, 11.4, 12.15), 2017년 1회(8.24) 2018년 3회(3.2, 4.19, 11.9), 2019년 1회(8.28), 2020년 1회(3.27), 2022년 1회(7.25.), 2023년 1회(8.30.), 2024년 2회(7.31., 11.18.)]임. 통일부는 2022년 9월 13일, 법 제12조에 따른 장관 추천 몫으로 이정훈(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범수(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한 바 있음.

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10.23.), “국가인권위,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

8) 2021년 당시 야당 교섭단체(국민의힘)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은 5명(김태훈, 제성호, 박선영, 김석우, 마수현)이 통일부장관(이인영) 및 여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임명부작위위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확정)되었음[2022. 5.13., 2021구합1169 판결]. 2022년 5월 여야 교체 후 여당 교섭단체(국민의힘)로부터 이사로 추천받은 5명(김태훈, 제성호, 김일주, 김성민, 홍성필)은 동년 11월 4일 국회 및 야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이사 추천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년 12월 20일에는 소를 제기하였음.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원고가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모두 “각하”[2023. 7. 1., 2022구합4776]하였지만, 원고가 국회사무총장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원고 일부승소 결정[2024.10.17., 2023누72914]을 하였음. 서울고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이사 추천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응답 의무가 있고 이사 추천 부작위는 원고의 지위와 권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임. 2024년 11월 국회가 이에 상고하여 2025년 2월 현재 진행중[대법원 2024두60381].

□ 개정안은 국회의 이사 미추천으로 인하여 재단이 출범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재단 이사에 대한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출범 및 그 운영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 바, 동 개정안에 따른 경우에는 신속한 재단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이 일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다만, 국회의 임명 동의·승인, 인사청문, 선출·추천 등의 인사와 관련한 중 본회의 의결 등의 명시적인 절차규정 없이 법률에서 단지 “국회(또는 국회의장)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통상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 또는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이 이를 결재하고 해당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⁹⁾을 취하고 있음.

□ 현행법이 국회로 하여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는 것은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¹⁰⁾ 임원 구성에 대하여 통상적인 입법례인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인의 경우 실무상으로는 의장이 3인, 외교통일위원회가 7인(위원장 1, 민주당 3, 국민의힘 3)을 추천하고,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며,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정관」 제23조에 따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국회의원 2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천함.

10) 국회가 관여하는 외부 인사 중 본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원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령에 명시하지 아니하여 실무적으로 “의장 결재”로 처리하는 경우 중 위원회 조직이 아닌 기관은 북한인권재단 외 독립기념관과 뉴스통신진흥회가 있음. 독립기념관 이사는 「독립기념관법」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의원 4명을 ‘지명’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3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붙임 참고자료 [국회의 ‘인사’ 관련 입법례] 참조.

의석수 비율”이 아니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은 “북한인권”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재단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볼 수 있음.¹¹⁾

즉, 현행법(제12조제1항)은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한 바,

재단 이사의 추천이 국회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실상 교섭단체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고,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국회 내 교섭단체가 협상하고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조속한 재단 출범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사업을 도모함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독립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임원 구성에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한 당초 입법 취지 등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와 함께, 각종 인사 추천 등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 온 국회의 관례 등¹²⁾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

11)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조직으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북한인권법 제5조 제2항),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등이 있음.

12) 국회가 인사 등을 추천할 때 그 기한을 둔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으나, 이 경우는 국회 ‘내부’에 두는 위원회의 인사 추천에 관한 사안으로, 국회의 ‘외부’ 인사 추천과 관련된 입법에서는 그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불임 참고자료 [국회의 ‘인사’ 관련 입법례] 참조.

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¹³⁾

□ 한편, 개정안에서 국회 또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 등을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어서 그 입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이 법의 목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달성을 위해서는 재단 운영이 필수적인 바 조속한 재단 출범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의견이고,

법무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입법정책적 판단사항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69

13) 제21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 국회가 이사 추천을 요청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하태경의원안, 의안번호 2116952), 일부 교섭단체가 3개월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권을 차순위 교섭단체에 부여하거나(조태용의원안, 의안번호 2102575), 3개월 이내에 추천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추천권은 다른 교섭단체가 1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지성호의원안, 의안번호 2108447)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 참고 자료 】

< 북한인권재단 설립 추진 관련 경과 >

- 2016. 3. 3. 「북한인권법」 제정·공포, '16.9.4. 시행
- 2016. 3~8월, 재단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등 설립 준비
 - 재단 설립위원회 회의 개최('16.3.25., 5.20., 8.26.)
 - △정관 인가('16.8.31.) △직제 편성(42명) △예비비 편성(47억원) 등
- 2016. 9월, 재단 사무실 마련 등 설립 및 운영체계 기반 구축
 - 2017년 출연금 118억원(전액) 불용
- 2018. 6월, 재단 출범 지연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
 - 2018년 출연금 109억원(전액) 불용
- 2016~2024년, 통일부는 대국회 재단 이사 추천 협조요청 공문 발송(14회)
 - * △'16년 4회 △'17년 1회 △'18년 3회 △'19년 1회 △'20년 1회 △'21년 1회 △'23년 1회
△'24년 2회
- 2021~2025년, 재단 출범 준비에 필요한 최소예산 편성(매년 4.75억원)

< 국회의 '인사' 관련 입법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 ~ ⑩ (생략)

「국회미래연구원법」

제6조(임원) ① 미래연구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 ③ (생략)

제7조(임원의 임명 등) ① · ② (생략)

③ 이사는 의장이 지명한 사람 1명,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 ⑥ (생략)

「독립기념관법」

제7조(임원) ①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생략)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 4., 2023. 3. 4.>

1. · 2. (생략)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 (생략)

④ · ⑤ (생략)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 ⑧ (생략)

□ 여야 교섭단체가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1. 12.>

1. ~ 6. (생략)

③ · ④ (생략)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약칭: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 5. (생략)

③ ~ ⑥ (생략)